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미 의원 발의]

의안번호	2510
------	------

발의일자 : 2024. 4. 15.

발 의 자 : 고성미 의원

찬 성 자 : 정재동 의원

## 1. 제안이유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제약이 되는 조항 등을 개정하여 의원연구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입법활동 활성화와 정책개발 및 의정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의원연구단체 대표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함(안 제3조제2항).
-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을 변경하고, 중간보고서 제출을 생략함(안 제11조제1항).
- 절차의 흐름에 따라 조문의 순서를 조정함(안 제11조 및 제13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미준수 사항을 정비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6조

2)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 및 별표1

나. 예산조치: 필요시 예산 조치

다. 기 타

1) 현행 조례: 별도 첨부

2)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3) 입법예고: 2024. 4. 16. ~ 4. 2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연구단체”를 “의원연구단체”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조례에서“서울특별시”를 “조례에서 “서울특별시”로, “란”을 “란 서울특별시”로, “이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특정의 관심분야에 관한 조례입법”을 “들이 특정 분야에 관한 입법활동”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를 “구성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의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연구단체”를 “의원이 해당 연도 연구단체”로, “라고”를 “이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심의위원

회”를 “제5조의 운영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운영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취소”를 “등록취소”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20%”를 “20퍼센트”로, 같은 항 단서 중 “단, 한”을 “단, 한 개의”로 하고, “지급할 수 있는”을 “지원하는”으로 하며, “1년에”를 “연”으로 한다. 같은 조 제3항 중 “연구활동비를”을 “예산율”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2조의 연구활동보고서”를 “제11조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로, “연구활동비의”를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의”로, “연구활동비를”을 “예산율”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제5조에 따른 위원회”를 “위원회”로,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나”를 “어느 하나”로, “제5조에 따른 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연구활동결과보고서”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로 한다.

제11조 및 제13조를 각각 제13조 및 제11조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3조)제1항 본문 중 “10일”을 “30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에는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1조)의 제목 “(연구단체의 활동 및 존속기한)”을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및 존속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및 존속기한) 연구단체의 연구 주제에 대한 연구활동 및 존속기한은 매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에는 같은 해 5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연구결과 보고서”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로 한다.

별지 서식 중 “별지 제7호 서식 연구활동 중간보고서”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u>연구단체</u>의 구성과 연구활동 지원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전문성 강화와 정책개발 역량을 제고하고 입법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이 <u>조례에서</u>“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금천구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이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특정의 관심분야에 관한 <u>조례입법과 구정의 발전</u>을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u>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u>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p> <p>2. 3. (생략)</p> <p>제3조(구성) ① (생략)</p>	<p>제1조(목적) ----- ----- <u>의원연구단체</u>----- ----- ----- ----- ----- ----- ----- -----.</p> <p>제2조(정의) ----- -----.</p> <p>1. -- <u>조례에서</u> “<u>서울특별시</u> -- ----- -----<u>란 서울특별</u> <u>시</u> ----- ---<u>들이 특정 분야에 관한 입</u> <u>법활동</u>----- ----- ----- <u>구성되어 서울특별</u> <u>시 금천구의회(이하“의회”라</u> <u>한다)</u>----- --.</p> <p>2. 3. (현행과 같음)</p> <p>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p>



제8조(연구단체 지원 등)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한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1년에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생략)

③ 연구활동비와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연구단체가 제3항을 위반하거나 제12조의 연구활동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 ① (생략)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해당

제8조(연구단체 지원 등) ① -----

-----

----- 20퍼센트 -----

트 -----

----- . 단, 한 개의

----- 지원하는 ----- 연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예산

을 -----.

④ -----

----- 제11조의 연구활동 결과보

고서-----

-----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

발비의 ----- 예산을 --

-----.

제9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위원회-----

----- 별지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단체 등록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생략)
2. 연구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3.·4. (생략)

제11조(연구단체의 활동 및 존속기한) ① 연구단체의 연구 주제에 대한 연구활동 및 연구용역 기간은 매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에는 같은 해 5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연구활동 종료시점으로 한다.

제13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①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

제10조(연구단체 등록취소) -----  
----- 어  
느 하나----- 위원회-  
-----  
-----.

1. (현행과 같음)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
- 3.·4. (현행과 같음)

제13조(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및 존속기한) 연구단체의 연구 주제에 대한 연구활동 및 존속기한은 매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에는 같은 해 5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① -----  
----- 30일 -----  
-----  
-----  
--.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

<p><u>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의 승인을 받아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u></p> <p>②·③ (생략)</p> <p>제14조(연구활동 결과관리 및 저작권) ① 의장은 연구회의 <u>연구 결과 보고서</u>를 금천구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원연구 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별지 제1호 서식 ~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p>	<p><u>는 해에는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u></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4조(연구활동 결과관리 및 저작권) ① ----- <u>연구 활동 결과보고서</u>----- ----- -----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현행과 같음) (삭제)</p>
---	--

# 현행 조례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10.15.] [(제정) 2022.10.15. 조례 제125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연구단체의 구성과 연구활동 지원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전문성 강화와 정책개발 역량을 제고하고 입법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 라 한다)”란 금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특정의 관심분야에 관한 조례입법과 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단체의 활동비(이하 “연구활동비”라 한다)란 정책개발 및 의원 의정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경비로써 의정운영공통 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
3. “의원정책개발비”란 연구단체에서 정책개발을 위해 발주하는 정책연구용 역비를 말한다.

**제3조(구성)** ① 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각 연구단체에는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단체의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다른 연구단체의 대표자를 겸할 수 없다.

③ 의원 1명이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 연구단체의 수는 2개 이하로 한다.

**제4조(등록)** 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 라고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대표자는 지체없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소속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등을 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심의위원회는 해당사항을 심의하며, 의장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단체의 심의)**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심의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활동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정책개발비 및 연구활동비 책정·배분·회수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연구단체 지원 등)**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한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1년에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장은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연구활동비와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연구단체가 제3항을 위반하거나 제12조의 연구활동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 ①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단체 등록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승인된 연구활동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의원정책개발비 및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4. 제3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제11조(연구단체의 활동 및 존속기한)** ① 연구단체의 연구 주제에 대한 연구활동 및 연구용역 기간은 매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에는 같은 해 5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연구활동 종료시점으로 한다.

**제12조(공동참여)**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제13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①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의 승인을 받아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는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의 사용내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연구활동 결과관리 및 저작권)** ① 의장은 연구회의 연구결과 보고서를 금천구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원연구 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저작권은 의회에 귀속된다.

부 칙(제1252호, 2022.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1. 연구단체명 :
2. 설립목적 :
3. 연구주제 :
4. 단체 인적사항

연번	소속 상임위원회	성 명	서 명	비 고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 연구활동 계획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연구내용		주제	
		목적	
연구활동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		(별첨)	
연구	총액	금 원(₩ )	
활동비	산출내역	(세부내역 별첨)	
기타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 의원연구단체 변동사항 통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연구단체 변동사항을 통보합니다.

연구단체명		
변동의원	당 초	의원
	변 경	의원
변동일자	년 월 일	
변동사유		
기 타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 의원연구단체 심의결과 통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제 3항의 규정에 따라 귀 단체의 등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 하였음을 통보합니다.

연구단체명	
대 표 자	
연구주제명	
심의·의결내용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운영위원장:

(인)

의원연구단체 대표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연구주제	당초	연구주제	
		연구목적	
변경내용	변경	연구주제	
		연구목적	
연구활동계획 변경사유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		(별첨 : 구체적으로 서술)	
연구활동비	총 액	금	원
	산출내역		
특기사항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연구활동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구내용	연구주제			
	연구목적			
연구활동비	수령액	금	원(₩ )	
	집행액	금	원(₩ )	
	잔 액	금	원(₩ )	
	집행내역	자료수집 및 조사비	금	원(₩ )
		회의 및 세미나 개최비	금	원(₩ )
전문가 활동 경비		금	원(₩ )	
기 타		금	원(₩ )	
의원정책개발비	수령액	금	원(₩ )	
	집행액	금	원(₩ )	
	잔 액	금	원(₩ )	
특기사항		“집행관련 증빙자료 일체”		

- 붙 임 1.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1부  
 2.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 1부.  
 3. 의원정책개발비 사용내역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활동 중간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연구내용	연구주제	
	연구목적	
최초 연구 기간		
연장 신청 기간		
기간 연장사유		
특기사항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 귀하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시행 2023. 11. 7.] [행정안전부훈령 제312호, 2023. 11. 7., 일부개정]

**제4조(기준경비)**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의회 관련 경비 중 의원국외여비·의정운영공통경비·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의원정책개발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1과 같다.

### ② 경비성격 및 편성기준

#### 1. 의정운영공통경비

- ① 경비성격 :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교섭단체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
-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 등의 소요경비 예산편성
  - ※ 지방의회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는 '의원역량개발비'로 계상
- ② 의회관련 경비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
- 예외 : 지방의회 교섭단체 지원을 목적으로, 전년도 의정운영공통경비 총액의 최대 10% 추가 편성 가능  
(다음연도 총액한도 산정 시에는 한도초과 증액분은 제외 후 산정)
  - ※ 추가 편성은 조례에 직접 지원근거를 둔 경우에 한하며, 교섭단체 수 및 교섭단체 내 의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편성